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 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지원은 위법이므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지역언론사의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다. 지역언론의 지원 근거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지역언론에 대한 정의 및 인천광역시 책무(안 제2조, 3조)

- 다.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4조)
- 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 마.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언론육성위원회
설치(안 제7조)
- 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위원회 회의 및 심의결과 공개(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 440-6214,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방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송 : 인천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나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에 가입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지상파 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
2. 신문 :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며,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문
3. 인터넷신문 :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

제5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여건·유통구조 개선과 정보화 지원사업
2.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콘텐츠 개발 사업
5. 문화예술, 체육관련행사 대행 사업
6.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 구독 지원 사업
7. 시청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 8..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교부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의 경비 지원외에 광고나 협찬 또는 입장료 등을 추가로 징수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역언론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언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언론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시책
2.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지원사업 성과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1. 언론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기자협회 인천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한국PD연합회 인천지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인천지방자치학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 전문가 1인
7.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8. 기타 지역언론과 지방자치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약간명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 언론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① 시장은 지역언론육성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은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은 사업 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지역언론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기준, 평가기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